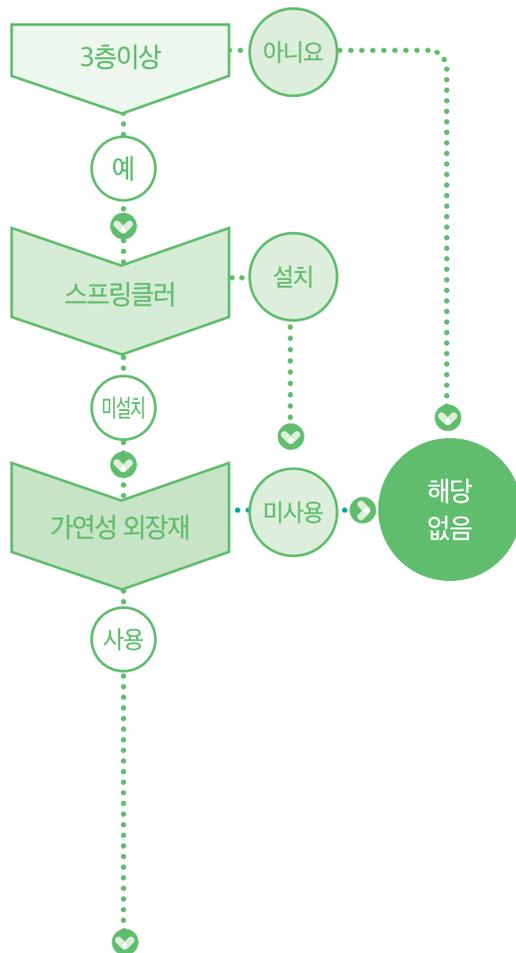


당신의 건축물은 화재에 안전한가요?

피난약자 이용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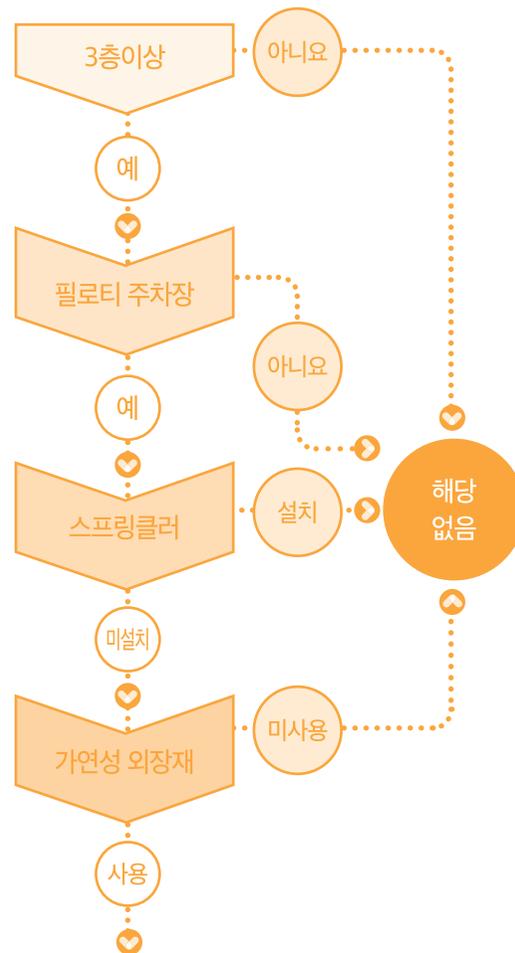
(의료·노유자시설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원)



다중이용업소

(건축물 전체 연면적 1,000㎡ 미만)

(고시원, 목욕장, 산후조리원, 학원)



의무대상으로 '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함

화재안전성능보강으로
안전은 UP
걱정은 DOWN

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



지원대상

※ 뒷면의 의무대상 자가진단을 확인해 보세요!

구 분	세부용도	지원대상 조건				
		3층 이상	가연성 외장재 사용	스프링클러 미설치		
피난약자 이용시설	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원	✓	and	✓	and	✓

구 분	세부용도	지원대상 조건						
		3층 이상	가연성 외장재 사용	스프링클러 미설치	1층 필로티 주차장			
다중이용업소 (건축물 전체 연면적 1천㎡미만)	고시원, 목욕장, 산후조리원, 학원	✓	and	✓	and	✓	and	✓

*가연성 외장재: 단열재, 외벽마감재 모두 불에 타기 쉬운 재료 (예. 드라이비트 등)

지원금액

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'22.12.31까지 한시적으로 **최대 약2,600만원/동 지원**

(총 공사비 4천만원/동 이내에서 “국가:지자체:신청자=1:1:1”)

*4천만원 초과분은 신청자 부담

보강방법

건축물 구조별 외장재 교체 또는 (간이)스프링클러 설치 등 필수공법 적용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,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 가능

일반 건축물	(간이)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준불연 외장재로 교체
필로티 건축물	1층 필로티 천장 보강 + 준불연 외장재로 교체 등

*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

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.

신청방법



의무대상 자가진단 : 대상여부 확인 (뒷면 참고!)



www.firesafety.or.kr 홈페이지 회원가입



www.firesafety.or.kr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

사업절차

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



신청

소유자 ▶ www.firesafety.or.kr 홈페이지에서 신청



보강계획 수립

소유자 · 시공업체



보강계획 검토

건축물관리지원센터



보강계획 승인

시 · 군 · 구



보강공사 시행

소유자 · 시공업체

※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www.firesafety.or.kr 을 참조하세요.

NAVER

건축물관리지원센터

